

보내는 사람

세무서장

□□□□□

받는 사람

귀하

□□□□□

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

성명			생년월일		
주소지					
통 지 내 용 (단위: 원)					
소득구분	의무상환액 (a)	납부합계액 (b=c+d)	원천공제한 금액(c)	본인이 납부한 금액(d)	납부할 의무상환액 (e=a-b)
근로소득					
사업소득					
연금소득					
합 계					
납부기한	년 월 일				
의무상환액 산출근거	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	② 년 자발적 상환액	의무상환액 = Min[(①-②), 통지한도액*]		
	* 통지한도액 = 대출잔액 - 통지·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				

-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가 원천 공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계좌번호 : 납부가능시간 : (: ~ :)

-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.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

직인

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☎) 또는 국세상담센터 (☎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